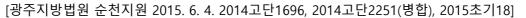
##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배상명령신청(취하

)

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4인

【검 사】김병욱(기소), 정경진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김성진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1년에, 피고인 2, 피고인 3을 각 징역 10월에,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, 피고인 5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